

# 美國 輸入規制

## 事例分析

=日本産 TV를 中心으로 =

黃 圭 輻  
本会 国際部長

本連載 原稿는 美国과 日本 両国간에 輸入側과 輸出側의 TV事例를 中心으로 分析한 研究報告書이다. 이 報告書의 資料는 美通商委員會의 것과 North Western 大學校의 研究팀이 分析한 資料를 택했다. 흥미 있는 分析 資料로써 第2回分을 게재한다.

### 3. 輸入規制

自由貿易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自國產業의 保護를 위해 特定 產業部門에서는 輸入規制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現実이다.

本稿에서 다루는 対象은 이미 定義된 바와같이 日本产 TV의 对美 輸入 규제 문제로서 이에 대한 美国通商委員會 (ITC)의 議決이 최근에 있었다.

이와 같은 最近의 議決에 到達하게 된 주요한 출거리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처음으로 日本产 TV의 对美輸出에 대해 덤핑의 이유로써 提訴한当事者는 미국 電子產業의 대변자인 電子工業協會와 勞動組合이었고 그 時期는 10余年 전인 1968年 3月 22日이었다. 数個月 後에 덤핑防止節次가 취해지고 1970年12月 5日에는 調査 결과와 함께 美国 行政機構인 財務省은 日本产 TV 輸入은 非正常的 價格에의 한 거래가 있었음을 確認 公告했다. 곧이어 1971年 3月 4日에 関稅委員會 Tariff Commission은 日本产 TV의 덤핑은 美国内 TV産業에 被害를 입혔음을 財務省에 通告 했다.

1972年과 1975年 사이에 개별 TV輸入 케이스 별로 덤핑마진을 찾아내고 이에 따르는 덤핑關稅를 부과했으나 異議申請, 調整申請은 물론 基礎資料의 蒐集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数億弗에 달하는 덤핑關稅가 算定되었으나 실제의 덤핑關稅徵收는 数百万弗에 지나지 않았다.

보다 더 主要한 것은 이와 같이 덤핑 事實이 確認되고 덤핑關稅가 부과되었는데도 다른 범주의 提訴가 계속되었다. 그것은 반독점 法에 의한 수출입 업자의 리베이트 Rebate 収受이다.

이 제소는 1976年 3月로써 새로운 양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덤핑關稅의 納付로써 완전히 문제가 解決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輸入되는 TV의 價格과 量이 문제가 되어 1977年 5月에는 日本政府가 協議下에 1977年 7月 1日부터 3年間 自律規制 Orderly Marketing Agreement 協定을 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주요시 되는 것은 價格보다 年間

最大輸出量을 175万台로 定함으로서 지나친 輸入市場의 占有를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日本产TV의 对美 輸出 문제는 덤핑関稅나 自律規制 協定만으로 문제가 解決되는지 못하였으며 문제의 根源은 美国内 TV産業의 취약성에 있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 1) 通商委員會의 議決

1981年 6月 14日 美国通商委員會는 日本产TV의 輸入에 대해 3对1의 票決로 덤핑規制의 계속을 議決하였다. 덤핑規制가 해제되거나, 修正된다면 輸入되는 日本产TV는 美国TV産業에 위협적이며 実質的被害를 입힐 것으로 同委員會는 判定하였으며 이와같은 議決은 1930年에 制定된 関稅法 第751条에 그 根據를 두고 있다.

위의 議決에 到達하게 된 理由 説明을 引用하면 「덤핑규제가 해제될 경우 취하게 될 日本輸出入業者들의 밀을만한 意圖를 살피기에 어려운 狀況에서 美国市場與件이 좋아지면 美国에 所在하는 日本国籍会社의 生產能力을 補充하기 위해서 非正常価格으로 对美輸出을 계속할 것이므로 綜合的企業의 実績과 能力에 의해서 狀況을 判断하지 않을 수 없다.

価格에 민감하고 競争的인 美国TV産業에게는 위와 같은 추세는 분명히 被害를 주게될 것이다. 위의 判斷과 相反되는 結論을 얻기 위해서는 美국내 TV産業이 健実하여 非正常価格에 의한 輸入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만약에 덤핑규제가 해제되거나 修正된다면 이로 인하여 美国의 TV産業은 実質的被害를 입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

위의 結論은 美国通商委員會(ITC)의 多数의 意見이고 少数의 意見은 아래와 같다.

세 가지 점에서 多数議決에 反對하고 있다.

첫째 : 1971年에 美国政府가 당시에 予想한 것과는 상당히 다르고 現在의 美国 컬러 TV産業은 많이 改善 향상되었다고 본다.

둘째 : 日本国籍会社가 美国 国内 TV 生産의 30%를 감당할만큼 美국내 TV産業의 構造가 변화하였다.

세째 : 1976年과 1980年 사이에 日本으로부터 들어오는 TV의 輸入은 減少했고 美국내 生産容量은 그 사이에 25% 증가하고 積動率은 45%, 生産은 80%, 出荷는 70%, 增加改善 되었다.

따라서 通商委員會의 小数 意見者인 Paula Stern은 덤핑규제가 해제되어도 美国内 産業에는 被害가 없을 것이라고 判断하고 있다.

이 小数 意見은 과연 輸入 規制의 核心的인 問題가 무엇인지를 부각시켜 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 2) 国内産業保護

1930年的 美国關稅法이나 1974年的 通商協定法에도 国内産業의 위치와 보호를 최우선시 하고 있고 輸入規制의 근거는 自國産業의 保護에 두고 있다.

두 가지 觀點에서 国内産業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단기적 觀點이고 또 하나는 장기적 觀點에서의 国内産業 保護이다. 단기간에 많은 量의 TV가 싼 값으로 들어오게 되면 市場은 우선 혼란을 겪게 된 것이다. 특히 製品間의 特色이 뚜렷하지 않고 凡用이 가능한 TV市場은 이른바 가격「리더」의 영향으로 国内 TV価格이 떨어지고 国内生産이 위축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国内市場이 크고 輸入이 차지하는 몫이 작은 경우, 즉 美国의 国内 生産量이 美国市場을 대부분 커버할 수 있는 경우에는 輸入品으로 인한 가격이나 生産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輸入量의 相對的比重은 큰 의미가 있다.

둘째의 경우는 장기적 안목에서 外國과의 관계 유지이다. 焦点은 國際分業에 의한 專門化 개념이다. 장기적으로 덤핑이라는 것은 不可能한 것이다. 그러나 長期的으로 輸入品의 가격이 저렴해지면 輸入品을 쓰고 그 대신 国内生産은 보다 유리한 製品을 生産하여 輸出하는 것

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TV와 같은 工產品의 長期的 生產価格 추세는 生產技術과 人件費에 달려 있다.

電子製品은 生產費 중에서 人件費가 차지하는 比率은 낮아지는 반면에 自動化에 따르는 生產技術費用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長期的인 觀點에서 보는 美國 TV產業은 크게 걱정할 것이 없으며 오히려 短期的 輸入規制는 生產技術의 高度化를 촉진할 것이다.

문제의 焦點은 短期的 輸入규제를 어느 時點에서 시작하며 또 어느 時point에서 해제하느냐에 달려 있다.

### 3) 輸入量

輸入量은 가장 구체적이며 綜合的 指標로 간주 된다. 前回에 揭載한 輸入量과 美國의 컬러TV 生產量 및 販売量을 比較해 보기로 하자.

— 이를 表-1에 다시 綜合 했다. —

1971年 미국 컬러TV 生產量은 5,398千台이었고 總輸入은 1,281千台였다. 그러니까 供給 可能量은 6,679千台가 되는데 實際로 販売된 컬러TV의 量은 6,338千台가 되니 需要에 比해 供給은 초과상태임을 볼 수 있겠다. 물론 美國产TV의 輸出과 在庫를 算入하면 供給과 需要是 균형을 이루게 된다. 관심사는 總販費에 대한 輸入 TV의 比重인데 1971年에는 20.2%를 차지하였다. 이를 年度別로 보면,

72年	73年	74年	75年	76年
17.1%	12.3%	12%	15.4%	29.4%
77年	78年	79年	80年	
21.9%	26.4%	13.5%	11.7%	

최근에 와서 상당히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總輸入의 絶對量에는 큰 변화가 없어도 販売量이 늘어나면 輸入의 相對的 比重은 떨어지고, 따라서 國內生産에 대한 압력도 줄어들게 된다.

사실상 위의 統計에서 이런 경향을 입증해 주고 있다.

한편으로 対日 輸入이 總輸入에 대한 比重은 1971年에는 压倒的인 큰 比重인 92.8%를 차지

表1. 컬러TV의 總輸入, 対日輸入, 生產 및 販売

(단위 1,000台)

年 度	販 売	生 產	總輸入	対日輸入
1971	6,338	5,398	1,281	1,190
1972	7,671	6,816	1,318	1,094
1973	8,537	7,828	1,398	1,058
1974	7,577	6,813	1,282	916
1975	6,761	5,389	1,214	1,043
1976	8,569	5,870	2,825	2,522
1977	9,239	7,005	2,538	2,029
1978	10,491	8,282	2,774	1,433
1979	10,085	9,012	1,368	513
1980	10,991	10,660	1,287	435

□ 資料 : Television Receiving Sets From Japan,

(Usitc Publication 1153)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하다가 최근에는 33.7%로 減少 되었다.

輸入規制는 販売에 대한 總輸入의 比重이 20% 水準이면 國內產業에 위협적인 水準으로 간주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반면에 輸入 比重이 10% 以下가 되면 사실상 輸入규제를 완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위의 分析은 實質的인 輸入量을 根據로 한 것 이기 때문에 다른 與件은 反映되어 있지 않다.

### 4) 價 格

輸入의 相對的 比率에 끊지 않게 주요한 것은 價格이다. 長期間 美國 TV價格과 輸入品의 가격을 比較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나 최근의 價格을 基準으로 比較해 보기로 하겠다.

13" 컬러TV의 美國販賣 價格을 輸出國別로 「電子振興誌 8月号 37페이지」에 이미 소개 하였다. 이 表에 의하면 제일 낮은 가격은 自由中國產이 미화 203弗이고 제일 높은 價格은 美國產으로 263弗이다. 이 차이를 보면 60弗이나 되어 상당한 價格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輸入TV는 價格面에서 상당한 競爭이 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그러나 日本產 TV의 販売価は 211弗에서 248弗의 범위를 보이고 있어서 美国產 TV価格에 接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의 分析으로 어느 정도의 競争이 成立되는지는 計量화하기 어려우나 日本產 TV의 価格은 경쟁의 폭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1980년 1月에서 6月까지의 各輸出国別TV의 美国市場 販売価格은 美国產 TV에 比해서 상당히 낮은 水準의 販売価를 유지하고 있다. 1979年 価格에 比해 1980年에는 日本產 TV도 207弗 및 209弗로 販売되어 오히려 前年에 比해 競争이 심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販売価格은 短期的으로 조정할 수 있는 폭이 크기 때문에 덤핑규제의 대상이 된다.

덤핑규제는 生産費 이하로 投賣할 때 成立되기 때문에 生産費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実質的인 市場의 価格차이에서決定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実質的인 차이는 美国產 제품의 価格에 비해 輸入品의 価格차이가 20%이상 되면 이는 덤핑 규제에 해당되는 요건이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相對的 차이가 法이나 施行令에 明示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 5) 利潤率과 雇傭

輸入과는 間接의인 関係에 있으나 国内産業보호를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国内해당산업의 利潤率과 雇傭이다. 輸入品은 市場占有와 価格面에서 競争 여건이 成立되기 때문에 이는 利潤率과 雇傭에 영향을 미친다.

輸入品이 늘어나면 国内生産이 위축되고 따라서 稼動率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生産施設의 稼動率抵下로 固定費의 比重이 높아지고 곧이어 이는 生産單価의 上昇과 利潤率이 떨어지게 된다. 물론 雇傭은 제일 먼저 감축대상이 된다. 生産量이 減縮되면 우선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労動費이고 이에 따라서 雇傭의 減縮을 면치 못하게 된다. 雇傭이 減縮되는 이유는 生産

量 감축에 의한 이유 외에도 生産施設의 自動化에 있다. 미국 컬러 TV 生産量은 1971年부터 상당한 기복은 있었으나 上向추세를 보였다. 반면에 雇傭은 상당히 감축되었다. 따라서 미국 TV 產業의 雇傭 減少 현상은 輸入 增加로 인한 生産量 감축 이유보다도 生産施設 自動化에 의한 이유가 더 支配的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미국 컬러TV 產業의 利潤率은 2%에 미치지 못하여 극히 抵調하다.

이를 生産施設 稼動率과 상관해서 볼 때 稼動率은 상당히 높은 水準을 유지하고 있는 데도 利潤率이 낮은 이유는 生産施設을 위한 新規投資와 TV 価格이 낮은데 있을 것이다. 낮은 TV 価格은 輸入TV 価格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 규제의 근거로서 利潤率은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輸入商品 価格이 国内 価格에 미치는 영향을 사실상 計量화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열거한 要素는 모든 輸入規制에 해당되나 日本產 TV의 輸入規制에서는 다음 與件이 상당히 比重있게 考慮되고 있다.

日本産業은 이미 오래전에 美国에 上陸하여 製造施設을 保有하고 있으며 製品을 美国市場에 供給하고 있다. 美国所在 日本国籍会社는 7個社에 이르고 販売高 基準으로 1980年에 27.4%의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狀況에서 美国側이 염려하는 것은, 日本国籍会社들이 日本의 母会社로 부터 저렴한 価格으로 部品을 大量 輸入 한다면 이는 美国 TV 產業에 不利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生産은 물론 国内 価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判断하고 있다. 따라서 日本產 TV部品의 輸入을 규제에 考慮하고 있는 실정이다.

## 6) 総合

輸入規制의 根據는 輸入品의 価格과 量이 国内産業에 미치는 영향으로 集的된다. 實현된 価格과 量뿐만 아니고 장래에 있을 수 있는 価格動向과 輸入量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객관적 基準을 마련하기 어려우며 輸入規制의 여러가지 「케이스」마다. 적

용될 수 있는 基準 또한 미약하다. 概念上 定義될 수는 있으나 實際에 적용하는 데는 분명히 어려움이 수반 된다.

非正常価格은 生産原価를 基準으로 하여 적절한 마진을 인정하는 것이나 生産原価를 輸入국의 해당 機関에서 把握하는 것은 거의 不可能한 것이며 설사 가능할지라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輸入規制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다. 더욱이 輸入규제가 해제되었을 때 輸入量과 価格動向을 추정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本稿에서 다룬 内容은 日本產 TV의 對美輸入 規制事例이었으나 輸入은 日本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로 부터 輸入品도 있기 때문에 美通商委員會의 決議는 輸入을 綜合하여 考慮하여 特

히 壓力團體로 부터의 제소 可能性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 分明하다. 輸入規制의 基準이 보호하다고 해서 輸入을開放할 수 있다는 論理도 成立되지는 못한다.

漸進的 변화를 염두에 두고 美國內 TV產業을 예의 관찰 하며 同時に 価格政策 또한 관망하면서 마찰을 적게하는 對美 輸出戰略을 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輸入規制를迂迴하는 方案으로서는 이미 日本이나 自由中國이 취한 것과 같이 美國 現地에 生産施設을 가지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이렇게 하므로써 美國 시장의 대량점유는 물론 第3國으로의 輸出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81年 各国 電子電機展 (11. 12月)

### 11月

일정	명	칭	개최지	개최국명
1~4	情報処理管理協会国際会議 BUSINESS展	샌프란시스코	英	国
10~14	PRODUCTRONICA '81	문 헨	西	独
13~20	SIMO 事務機展	'마 드 리 드	스	페 인
13~20	INTERCLIMA 暖房空調見本市	파 리	프 랭	스
14~18	東南아시아 가정용電子機器展	싱 가 폴	싱 가	폴
17~19	카나다 컴퓨터 SHOW	미 시 시 아 가	카 나	다
17~20	ELECTRONICS '81		英	国
18~20	SEMICON/JAPAN '81	東 京	日	本
上旬	'81中部 ELECTRONICS SHOW	나 고 야	日	本

### 12月

2~4	国際医療見本市	스 톡 홀 럼	스 웨	덴
7~11	IEEE 紫外線 및 밀리미터波에 관한 會議	마 이 아 미	美	国

\* 主催側의 事情에 의하여 일정, 장소가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